

日本の「特定石油製品 수입원활화 임시조치법(안)」

日本の通産省・資源에너지庁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휘발유·灯油·輕油의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「特定石油製品輸入원활화 임시조치법(가칭)」을 마련했다.

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업자는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通産대신에게 제출하고, ② 通産 대신은 이 계획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③ 수입업자는 등록제로 하고 수입노력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.

資源에너지庁은 이 법안을 11월 중순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하며,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,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현재 石油業法에 의하면, 석유제품의 수입은 신고제로 가능하지만, 資源에너지庁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석유제품의 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. 새 법안은 석유제품수입에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서 휘발유, 등유, 경유를 「특정석유제품」으로 定義, 이를 수입하는 업자에게 通産性에 등록을 의무화했다.

등록대상은 ① 특정석유제품의 수입이 감소할 경우 代替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, ② 일정한 저장시설을 확보하며, ③ 수입제품의 품질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는 3개 조건을 갖춘 업자에 한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. 이 3가지 조건을 완비한 것은 현재 정유회사로 결국 정유회사만 특정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.

通産대신이 수입업자에 대해 수입계획의 변경권고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제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업자들

정유회사에 한정시켰기 때문에 수입계획을 제출한 후, 실제로는 계획을 하회하는 量만 수입할 가능성도 있고 또 제출된 계획에 의한 수입량이 매우 소량인 경우도 예상된다.

이와 같은 경우에는 通産대신이 계획에 명시된 수입을 지시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特定석유제품 수입원활화 임시조치법(가칭)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.

3. (등록기준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① 특정석유제품의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代替생산할 수 있는 설비 등을 보유할 것.

② 일정한 저장시설을 보유할 것.

③ 수입제품의 품질을 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할 것.

4. (특정석유제품수입계획의 제출 및 권고·지시) 특정석유제품수입업자는 특정석유제품수입계획을 작성하여 通産대신에게 제출해야 하며, 通産대신은 석유의 수급사정 기타 사정에 따라 특정석유제품수입업자에 대해 특정석유제품수입계획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시할 수 있다.

5. (특정석유제품수입업자의 수입노력) 특정석유제품수입업자는 국제적인 석유제품 무역동향에 맞추어 특정석유제품수입의 안정적인 실시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.

6. (기타) 심의회에 대한 자문, 보고정수 및 임회검사, 벌칙등 소요규정을 설정한다. *